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|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민상기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식서비스투자팀장(02-2110-3871), 홍찬자 사무관(3876)

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다.

-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 -

□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건의와 관련해

○ 지식경제부는 경자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복지부,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온 바,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(이하 경자법)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동 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·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키로 했다고 밝힘

○ 다만, 관련 법안*이 국회에 계류중이므로, 시행령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는 금주 중 착수하되, 최종 확정절차는 국회의 법안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는 계획임

*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안(황우여의원 발의),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2건(이명규의원, 손숙미의원 발의)

○ 당초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하였으나 계속 지연됨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

□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현 경자법 하에서도 문제가 없으나, 동 법은 개설요건으로 의료법상의 요건 외에는 자본금과 외투비율만 규정*하고 외국병원 참여여부,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개설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

* 자본금 50억원 이상, 외국인 투자비율 50% 이상

○ 이러한 상황은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과소투자나 과다투자를 야기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나 국민보건의료체계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

○ 이번 경자법시행령 개정은 허가요건*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,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외국의료기관의 남설을 막아 국민보건의료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임

* ①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토록 의무화
② 외국면허 소유 의사·치과의사를 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율이상 고용
③ 보건복지부령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을 위임

□ 다만,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은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요건과 특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, 경자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최소한의 개설허가요건만 포함될 수 있어

○ 외국의료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의료기관 특성상 불가피한 특례를 담은 법률 개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

○ 정부도 계류법안들의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, 모든 특례조항의 원안처리를 요구하지 않고,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임